



**CHOI HONG LEE & KANG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CONSULTANTS



[WWW.CHLKCPA.COM](http://WWW.CHLKCPA.COM)

# 2021-2022 Tax Update

## ECONOMIC IMPACT PAYMENT (EIPS)

ARPA (American Rescue Plan Act)가 통과됨에 따라 3차 경제적 영향 지원금(EIP)의 지급이 되었습니다. IRS는 2021년 3월 중순에 세 번째 경제적 영향 지원금 (EIP)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불 금액은 납세자 및 부양 가족당 \$1,400입니다. 지급액은 2020년 세금 보고 조정후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지원금 (EIP)"과 "회복 환급 세액공제 (Recovery Rebate Credit)"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납세자의 2021년 납세액에 대한 선지급 공제(Advance Credit)으로 간주됩니다.

## CHILD TAX CREDIT (CTC)

2021 과세 연도에만 자녀 세액 공제 (CTC)가 증가되고 세액공제 (Credit)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정한 조정후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미만의 신고자의 경우 공제 금액이 어린이 (18세 미만) 1인당 \$ 2,000에서 어린이 1인당 \$ 3,000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 3,600)로 증가했습니다. 이 자격이 되는 아동은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어야 하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SSN)을 소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자녀의사회보장번호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녀가 아닌 다른 부양자에게 제공되는 \$500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IRS § 24(h)(4)(A)에 의거).

##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RS는 실제 통화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또는 실제 통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 통화의 과세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RS Notice 2014-21)

1. 2021년 중 어느 시점이든지 가상 화폐로 금전적 이익을 수령, 판매, 송금, 교환 또는 취득한 납세자는 거래로 인한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3.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4.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납세자는 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CHARITABLE CONTRIBUTIONS

개인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Itemize Deductions)를 선택할 경우, 2021년 조정후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100%까지 현금 기부금을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The CARES 법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가 아닌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s)를 선택한 납세자들을 위해 현금 기부에 대해 \$300 공제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600)를 제공합니다. 이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와 다르게 조정후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바로 공제 가능합니다

# PLUG-IN ELECTRIC DRIVE VEHICLES CREDIT

1. 세액공제의 범위는 2021년에 구매한, 자격에 해당되는 새 전기 차량으로 차량당 \$2,500 ~ \$7,500입니다. 세액공제는 배터리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배터리 제조업체가 200,000대 이상을 판매한 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낮아집니다.
2. 캘리포니아에는 비교 가능한 세액공제가 없지만 캘리포니아 청정 차량 리베이트 프로젝트(CVRP)를 통해 할인(Rebate)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차량에 따라 \$1,000~\$7,000 범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은 최대 \$2,50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HANGES OF RETIREMENT PLAN

1. 2019년 12월 3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Traditional IRA에 불입할 때 연령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는 70.5세 이후에도 불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 과세 연도 중 72세가 되는 납세자는 72세가 된 다음 해의 4월 1일까지 첫번째 최소요구 분배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 RMD)를 수령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MD를 연기한 납세자는 두 번째 해에 2 번의 RMD를 수령해야 합니다. RMD를 수령해야 하는 자격이 되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3. 납세자는 "적격 기부 분배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 - QCD)" 명목으로 연간 최대 \$100,000를 조정후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70.5세에 되는 날짜 또는 그 이후에 QCD로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체들은 QCD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민간 재단(Private Foundation), Donor-Advised Fund, 자선 잔금 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 또는 자선 연금 (Charitable Annuity).

# NET OPERATING LOSS (NOL) MODIFICATION BY CARES ACT

1. 과세 연도 2018-2020에 발생한 손실 (NOL)은 과거 5년 소급 적용(carry back)될 수 있습니다.
2. Tax Cuts and Jobs Act 법안을 통한 80% 과세 소득 제한 (80% taxable income limitation)은 2018-2020 과세 연도 동안은 유예되었습니다.
3. 연도별 손실 (NOL) 처리 방식

손실 발생 연도	과거 소급 가능 연수 (Carrybacks)	과세 소득 제한 (Taxable income limitation)	이월 가능 연수 (Carryforward)
2018 이전	Federal: 2년 CA: 2년 (2013-2020 손실)	Federal: 과세 소득의 100% CA: 과세 소득의 100%	Federal: 20년 CA: 20년
2018-2020	Federal: 5년 CA: 2018 이전 손실: 2년 2019 이후 손실: 없음	Federal: a. 2020년 이전 세금보고에 청구: 과세 소득의 100% b. 2021 및 그 이후 세금보고로 이월: 과세 소득의 80% CA: 과세 소득의 100%	Federal: 무한 CA: 20년
2020 후	Federal: 없음 CA: 없음	Federal: 과세 소득의 80% CA: 과세 소득의 100%	Federal: 무한 CA: 20년

## PENALTY ISSUE FOR NOT HAVING HEALTH INSURANCE CONTINUE IN 2021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면제 자격이 없는 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1년 벌금은 다음 둘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1) 가족 성인 1인당 \$800 (부양 자녀당 \$400); 또는
- 2) 가정의 세금 보고하는 총 소득의 금액의 2.5% 중 더 높은 금액이 됩니다

## PASS-THROUGH ENTITY ELECTIVE TAX

캘리포니아에서 S Corp, 파트너십, 그리고 파트너십이나 S Corp 으로 과세되는 LLC는  
과세 연도 2021년 - 2025년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 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주주)의 연방 순이익 (Federal Net Income)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파트너(주주)가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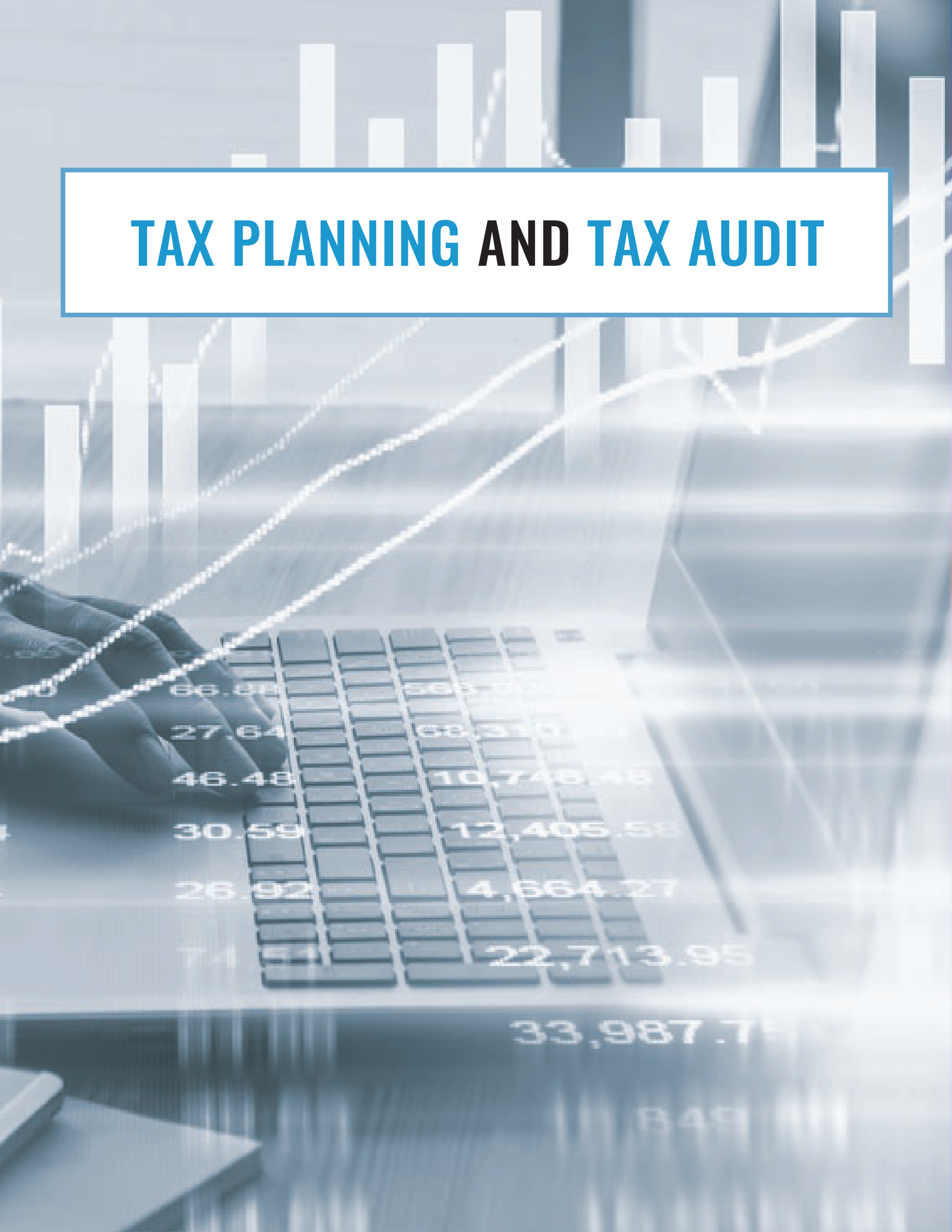
## CALSAVERS PROGRAM

CalSavers는 고용주가 자체 은퇴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IRS는 캘리포니아 CalSavers 프로그램을 Roth IRA로 분류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로 선택했지만 Roth IRA에 저축할 자격이 없는 납세자는 4/15/2022 이전에 신청하는  
조건하에 Traditional IRA로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501(c)(3) 면제가 있는 비영리 종교 단체는 CalSavers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기한은 50-99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경우 6/30/2021까지 등록했어야 하며, 그 이하의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경우 6/30/2022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TAX PLANNING AND TAX AUDIT



66.88	583,800
27.64	68,340.00
46.48	10,748.48
30.59	12,405.58
26.92	4,664.27
74.54	22,713.95
	33,987.75

849

## MEDICAL EXPENSE DEDUCTIONS

IRS는 모든 납세자의 총 의료 비용이 조정후 총 소득 (AGI)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1년 의료 마일리지 (Medical Mileage) 비율은 16¢ / mile입니다.

## INCOME EXCLUSION OF CANCELLATION OF DEBT ON PRINCIPAL RESIDENCE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주거주지의 모기지 용자 탕감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에서 면제 됩니다. ( \$750,000까지, 부부 별도 보고서 \$375,000까지) 캘리포니아는 2013년 이후, 주거주지 모기지 용자 탕감 소득 면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CONTRIBUTION TO RETIREMENT SAVINGS

퇴직 연금 플랜(401(k), SEP IRA 등)에 저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1년의 경우 401(k)의 최대 금액은 \$19,500 (50세 이상인 경우 \$26,000)이고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의 최대 금액은 \$58,000입니다. 2022년에 납세자는 401(k)의 경우 최대 \$20,500 (50세 이상인 경우 \$27,000), SEP IRA의 경우 최대 \$61,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RETIREMENT PLANS: TRADITIONAL IRA AND ROTH IRA

납세자는 2021년 세금 공제를 위해 2022년 4월 15일까지 IRA 계정에 최대 \$6,000 (50세 이상인 경우 \$7,000)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소득 (Conversion Income)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전환은 특정 상황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의 세금 혜택 환급).



##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퇴직 연금계좌 소유자가 59½세가 되기 전에 계좌에서 퇴직금 수령 (Distribution)을 하게 되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A 또는 적격 연금 플랜에서 수령한 퇴직 연금 금액은 수령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롤오버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없이 롤오버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교육 목적과 "첫 주택 구입"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 10% 추가 세금에서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1년 예외 적용 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GIFT TAX / ESTATE TAX EXCLUSION

2021년 연간 증여세 공제액은 \$15,000 (2022년은 \$16,000)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15,000 이상의 증여를 하는 납세자는 해당 증여를 증여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1년의 경우 1인당 통합 증여 및 상속세 면제는 \$11,700,000 (2022년은 \$12,060,000) 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 \$5,000,000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연간 공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평생 공제액에 합산되므로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FOREIGN-EARNED INCOME EXCLUSION

2021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최대 \$108,700의 해외 근로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217,400까지 (2021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과세 주거지 (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physical presence test)이었거나 Bona fide residence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동안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개인 세금 보고서 해외계좌를 2022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0/15까지 연장가능). 외국 금융 계좌에는 다음 계좌들이 포함됩니다: 중개 계좌(brokerage accounts), 뮤추얼 펀드(mutual funds), 신탁(trusts) 또는 기타 유형의 외국 금융 계좌.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3,481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34,806 혹은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2011년부터 모든 은행 계좌, 보유 주식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시가 기준)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합니다

연말 기준 : 미국 거주시 - 부부 \$100,000 /Single \$50,000,  
외국 거주시 - 부부 \$400,000 /Single \$200,000

연중 최대잔고: 미국 거주시 - 부부 \$150,000 /Single \$75,000,  
외국 거주시 - 부부 \$600,000 /Single \$300,000

## PRINCIPAL RESIDENCE

소유한 주택에 최근 5년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택판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 (Single), \$500,000 (부부)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INVESTED DIVIDENDS

재투자된 배당금은 처음 주식을 구입한 금액과 함께 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CAPITAL GAIN (LONG-TERM)

Rate	Taxable Income Breakpoint (2021)			
	독신 (Single)	부부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개별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외부모 (Head of Household)
0%	\$40,400	\$80,800	\$40,400	\$54,100
15%	\$445,850	\$501,600	\$250,800	\$473,750
20%	No Breakpoint			

\*\*조정후 소득(AGI) 금액에 따라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INVESTMENT INTEREST

투자 시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해당년도에 미사용된 이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NSTALLMENT SALE

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대금을 분할 상환 (Owner Carry) 하면, 이익금을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등은 제외).

## NET OPERATING LOSS (NOL)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영업 손실 (NOL)의 경우, 2021년 이전 과세연도 세금보고에 소득을 상쇄기키는 것은 10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과세 소득의 80%까지 이월 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합니다. 남은 손실 이월은 다음해로 무제한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NOL은 최대 20년까지 이월 가능).

## AUTOMOBILE EXPENSE

2021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Mile당 56¢입니다. 납세자는 입증을 위해 자세한 마일리지 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commuting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PPP 차용인이 적용 기간 (covered period)의 마지막 날 이후 10개월 이내에 PPP 탕감을 신청하지 않으면 차용인은 PPP 대출 기관에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SBA는 \$150,000 이하의 PPP 대출에 대해 차용인 직접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포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PPP 용자 면제는 과세 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십 파트너 및 S Corp 주주의 basis는 높여주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회사의 수입금액 (gross income)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5% 이상 감소한 경우, PPP 비과세 인정에 관한 연방의 조치를 따를 것입니다.

##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ERC는 특정 고용세에 대해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입니다. 적격 고용주의 조건으로는 COVID-19로 인해 운영이 전체 또는 부분적인 중단, 혹은 총 수입의 특정 비율 이상 감소입니다.

최대 크레딧은 2020년 직원 당 연간 최대 \$5,000까지, 2021년에는 3분기까지 직원 및 분기당 최대 \$7,000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 PAID SICK AND FAMILY LEAVE CREDIT

10일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PAID SICK AND FAMILY LEAVE CREDIT) 혜택 기간이 초기화되어 이전에 2020년 및 2021년 1분기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한 고용주는 04/01/21에서 09/30/21 사이에 추가로 10일의 유급 병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크레딧과 유사한 환불 가능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SECTION 179 AND SPECIAL DEPRECIATION

Section 179에 따라 사업주는 \$2,562,000 미만의 장비 구입시 \$1,080,000 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되는 새 장비 혹은 중고 장비 구입시에도 100%까지 Bonus depreciation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MEAL & ENTERTAINMENT

2018년 부터 Client Entertainment (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 에 대한 Deduction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고, Travel 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됩니다.

Clients와의 식사는 종전과 같이 50% 공제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Holiday parties, Company Picnics, and other occasional employee appreciation events는 종전과 같이 100% 공제됩니다.

이벤트 진행시 행사비와 식비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식사비 공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PENSION PLAN

기존의 은퇴연금 계정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ension Plan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CALIFORNIA SEXUAL HARASSMENT TRAINING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결정으로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성희롱 교육 마감일이 202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수료일 이후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교육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음 교육 마감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직원이 2021년 동안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이 지나기 전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INCOME TAX AUDIT

## SOURCE OF LIVING EXPENSE

보고하신 소득보다 생활비 및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자금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SOURCE OF FUND

부동산 및 사업체 매입 시, Down Payment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BANK DEPOSIT

만약 은행 입금이 보고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Check Copy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입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을 \$250 이상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현금 확인서를 받으시고, \$250 미만을 기부하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Canceled Check 등) 보관해야 합니다. \$5,000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신 경우, 감정사의 싸인이 포함된 서류가 세금 보고서 필요합니다.

## SEPARATE BANK ACCOUNT

모든 Business 수입은 Business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Business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Check를 사용하여 Transfer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CASH TRANSACTION

은행 거래 시 \$10,000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3,000 이상 \$10,000 이하의 현금거래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보관한 뒤 정부 요구 시 제출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10,000 이하로 분할 입출금한 의도가 보일 경우에도 IRS에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Business 거래에서 연간 \$10,000 이상의 현금을 한명의 손님에게 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INCOME TAX AUDIT

## FOREIGN GIFT

2021년에 외국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 혹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16,649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3520 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FORM 1099 FILING REQUIREMENT

납세자가 form 1099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form 1099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ue Dates까지 IRS 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Form 한건당 \$50 ~ \$270 벌금이 부과됩니다.

### - Form 1099 Due Dates

- 1) Paper Form 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2,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2/28/2022.
- 2) E-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2,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3/31/2022.

## RECORD KEEPING

Bank statement, cancelled checks, 영수증, 송장 (invoices) 및 기타 모든 문서는 세금보고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부동산 구입관련 서류 (Escrow Paper등)을 해당 세금보고 후 4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AUDIT NOTICE

감사를 통보 받으시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혹은 가정으로 감사관이 불시 방문하는 경우, 감사관의 신원과 방문사유를 확인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 Los Angeles Office #1 (Suite 480)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F: (213) 365-1726

### Partners

Ilsup (Tommy) Lee	(213) 639-6285	ext.717	tlee@chlkcpa.com
Ik Su (Justin) Kang	(213) 639-6296	ext.716	jkang@chlkcpa.com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13	sykang@chlkcpa.com
Kyu J.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 Managers

Samantha Kang	(213) 550-2183	ext.712	samkang@chlkcpa.com
Changkwon Moon	(213) 550-2184	ext.720	ckmoon@chlkcpa.com
Amy Lee	(213) 639-6295	ext.719	amylee@chlkcpa.com

### Staffs

Haley Jeehea Ahn	(213) 481-5486	ext.722	hjahn@chlkcpa.com
In Joo Moon	(213) 550-2185	ext.724	ijmoon@chlkcpa.com
Sharon Cha	(213) 427-9595	ext.728	scha@chlkcpa.com
Erika Oh	(213) 550-2090	ext.725	erikaoh@chlkcpa.com
Sangmee Janice Kim	(213) 481-5474	ext.726	jkim@chlkcpa.com
Junyong Jung	(213) 550-2091	ext.714	jjung@chlkcpa.com
Hyemin (Hannah) Kim	(213) 365-1700	ext.700	hannah@chlkcpa.com
Jihyun Kim	(213) 550-2238	ext.711	jhkim@chlkcpa.com
Frederick Kim	(213) 365-1700	ext.718	fkim@chlkcpa.com
Bokyung Shin	(213) 365-1700	ext.700	bshin@chlkcpa.com
Kyeongbin Park	(213) 550-2186	ext.723	lpark@chlkcpa.com

### Advisors

Jung G. Choi (Inactive)	(213) 365-1700		jjgbsbc@gmail.com
Sung Ha Hong (Inactive)	(213) 365-1700		sunghahongcpa@hotmail.com
Spencer S. Moon	(213) 365-1700		spencermooncpa@gmail.com
Jay Chung	(213) 365-1700		jaynchung@gmail.com

## Los Angeles Office #2 (Suite 1080)

3435 WILSHIRE BLVD., SUITE 10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2-8001 F: (213) 382-9115

### Partner

Henry Kim	(213) 503-7123	ext.780	hkim@chlkcpa.com
-----------	----------------	---------	------------------

### Staffs

Emily Chung	(213) 503-7123	ext.781	echung@chlkcpa.com
Donguk Kim	(213) 503-7123	ext.786	dkim@chlkcpa.com

## Torrance Office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F: (310) 370-5565

### Partner

Youngsun (Judy) Rufsvold	(310) 542-6373	ext.701	jko@chlkcpa.com
James M. Chung	(310) 542-6373	ext.705	jchung@chlkcpa.com

### Staffs

Seo Won Choi	(310) 542-6373	ext.703	schoi@chlkcpa.com
Elly Lim	(310) 542-6373	ext.704	elim@chlkcpa.com

### Advisor

Hong Won Suh	(310) 542-6373		
--------------	----------------	--	--

